

노인인권보호지침



우리재가복지센터

노인인권보호지침

인권이란

존엄을 지닌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 권리

1.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 .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
- 나. 노인복지법 제2조와 제4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 이념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 다.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게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 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2.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인권보호

- 가. 시설노인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있고, 시설이라는 제한된 환경과 여건 등으로 인권을 보장받기엔 어려운 현실
- 나. 노인복지시설의 증가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증가로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마련

1) 재가 또는 시설 이용 및 생활노인 권리선언

-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③ 안전하고 과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④ 대상자택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⑤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⑥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⑦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⑧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⑨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문제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⑩ 대상자택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⑪ 기관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2) 노인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③ 어떠한 이유로든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받은 노인에게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④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

유지하고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기관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⑥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단이 없는 한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⑤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⑥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⑦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협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I. 정의 및 유형

1.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2.

유형



(1) 신체적 학대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학대	대표적 행위
1.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노인을 발로 찬다. ▶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한다. ▶ 노인의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 노인의 목을 조른다. ▶ 노인을 손 떠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 노인의 몸을 발로 밟는다. ▶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닌다. ▶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는다. ▶ 노인을 입으로 물어뜯는다. ▶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담배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2.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 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낸다.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3.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ex: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설치한다.
4.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5.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 시킨다.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으로부터 단절시킨다.
6.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통제하거나 저해한다.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다.
7.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2)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학대	대표적 행위
1.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2.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비방이나 유언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3.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노인에게 고향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노인에게 창피를 준다.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4.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소외시킨다.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3)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성적 행위

학대	대표적 행위
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수없는 노인을 성폭행 한다.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노인의 신체를 빚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 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 행위를 보게 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는다.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학대	대표적 행위
1.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공적 부조(ex: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2.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도용).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용한다.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3.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상용하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5)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학대	대표적 행위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납부)를 방치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4.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자기방임)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	---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유기 학대	대표적 행위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이행을 거부한다.

3.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학대유형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신체적 학대	▶ 힘 또는 폭력으로 통제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타박, 골절 등의 피해가 생긴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한 적이 있다. ▶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 적이 있다. ▶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 적이 있다. ▶ 적법한 절차 없이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끈이나 억제대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사용한 적이 있다. ▶ 생존유지에 필요한 식사, 음료,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로부터 단절시킨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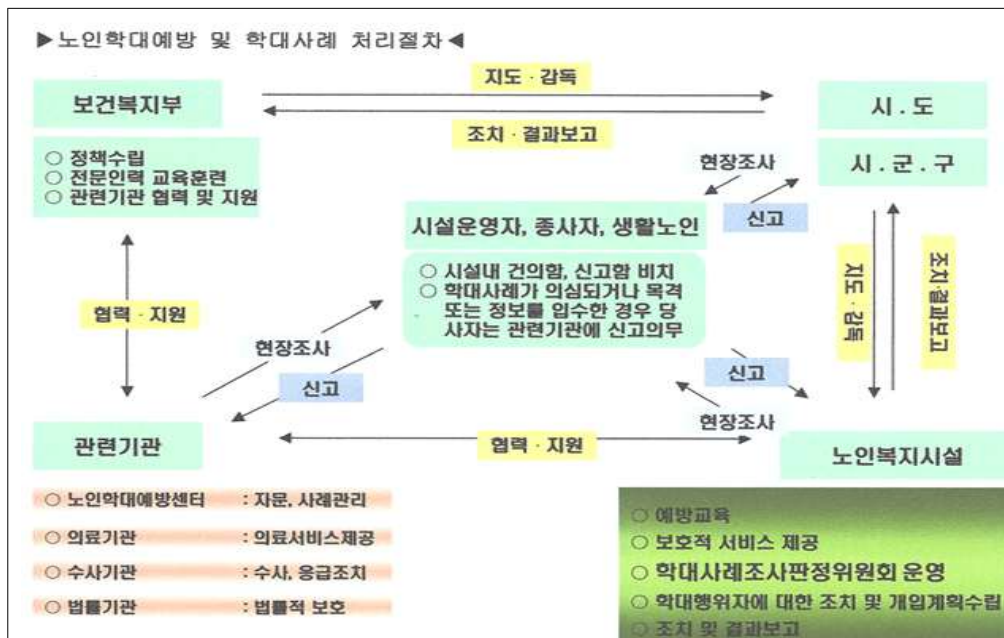
	▶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 적이 있다.
정서적 학대	▶어르신을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등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한 적이 있다. ▶어르신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모욕적인 말,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어르신에게 ‘집으로 보내겠다’, ‘밥 안주겠다’, ‘죽게 내버려두겠다’ 등의 위협과 협박을 한 적이 있다. ▶입소 및 퇴소, 물품 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어르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행한 적이 있다. ▶어린이 다루듯하며, 반말을 사용한 적이 있다. ▶종교 활동을 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참여시킨 적이 있다. ▶어르신의 가족, 친구 등과의 만남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적이 있다.
성적 학대	▶어르신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킨 적이 있다.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은 적이 있다.
경제적 학대	▶어르신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갈취한 적이 있다.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노령연금 등)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 적이 있다. ▶어르신 돈이나 재산을 어르신 마음대로 관리 또는 사용 못하게 한 적이 있다. ▶어르신의 재산을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다.
방임	▶스스로 할 수 없는 식사, 배변, 목욕, 옷입기 등 일상생활 도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화재, 안전사고, 위생문제 등 위험한 환경 등에 노출시킨 적이 있다. ▶청결유지를 소홀히 하여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하거나 악취가 난 적이 있다. ▶어르신의 의복, 침구 등을 비위생적으로 제공한 적이 있다. ▶어르신의 의복을 날씨와 계절에 맞지 않게 제공한 적이 있다.

	▶ 필요한데도 병원 치료를 신속히 취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어르신에게 필요한 병원 치료를 신속히 취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어르신에게 필요한 보장구(휠체어, 보행보조차, 위생용품, 이동식좌변기 등)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 돌봄의 부족과 소홀로 악취, 욕창, 염증 등이 나타나거나 심해진 적이 있다. ▶ 어르신이 치료, 약복용, 식사 등을 거부하여 몸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목격한 적이 있다(자기방임). ▶ 어르신이 자살을 계획 또는 시도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자기방임).
유기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 시설 입소 후 가족과 연락을 시설 측에서 두절시킨 적이 있다. ▶ 어르신을 시설 입소 후 알수 없는 낯선 곳으로 장시간 옮긴 적이 있다.

II. 예방

1. 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기관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기관은 기관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이용노인 학대사례 개입

1) 례의 발견과 신고	기관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관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이용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기관 종사자는 이용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모든 기관의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이용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노인학대 예방센터, 보건복지콜센터: 전화129),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이용노인은 해당 기관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

	이용노인이 동료 이용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기관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관의 이용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신고를 받은 기관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정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기관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록 3의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이용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학대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과 사무국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기관장, 사회복지사, 간호사(또는 촉탁의, 물리치료사) 등 기관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외부의 노인학대 전문가와 관련기관 종사자(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 등의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현장조사가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학대 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학대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 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관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 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사례에 대한 보호조 치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평가와 사후조 치	○기관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사례평가의 경우 피학대 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을 참석시켜야 한다.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역할	기관종사자의 역할
◎기관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기관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공시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초빙(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실시 ◎기관운영위원회에 이용자 대표 또는 가족 1인 이상 참여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당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바람직한 노인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 장 마련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란?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의 료 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모든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 료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 관련 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모든 직업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의 모든 직원

-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정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그렇습니다. 법으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위 조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부착



Ⅲ. **대응방법**

1.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요령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제2항) ◎주변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 ◎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신고방법	•1577-1389로 전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선신, 온라인 등을 이용
☎ 신고내용	•피해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신고자의 비밀보장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